

납세자의 주거현황 및 보유세와 납세의식 관계 분석*

신영효** · 정규언***

<요 약>

본 연구는 납세자의 주거현황 및 보유세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조세저항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납세의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변수와 납세의식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의식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의식을 세부담에 대한 인식, 증세기 세부담 의향,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고, 관심변수는 주거현황 및 보유세 관련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다는 것만으로 납세자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높을수록 여러 납세의식에 있어 부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본인의 세부담이 많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세부담에 비해 정부혜택도 많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었다. 셋째, 주거환경 만족도와 월평균 주거비용이 납세자의식과 여러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환경만족도와 세부담을 결부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주면적도 면적이 넓은 곳에 주거할수록 대체로 긍정적인 납세의식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재산세 납부여부나 부동산소득 유무가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았으나 재산세 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이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주택 보유형태 및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사항과 납세의식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한 의의가 있으며,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 시 납세의식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보유세, 재산세, 부동산임대소득, 주거현황, 납세의식

* 본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학술대회, 한국세무학회의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한국세무학회 30주년 기념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대우교수, younghyo@koreatech.ac.kr, 주저자

***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 jungkyu@korea.ac.kr, 교신저자

I. 서 론

납세의식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왔다.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탈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법개정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납세자들의 거센 조세저항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에 납세의식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납세 순응, 조세에 대한 태도나 납세의식에 대해 이루어져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다. 2017년 6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낮춰 부동산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 놓았으며, 2달 뒤인 8월 2일에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했으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에게 세율을 중과¹⁾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였다.²⁾ 또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보유세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도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수립 중에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유세 개편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해마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법이 개정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세 부담 인상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정책기조로 볼 때 보유세도 현재보다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보유세 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세저항이 거세질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현재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조세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부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을 설득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목적이 있다. 주거의 형태나 자신이 재산세나 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현재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최신자료와 목적적합한 자료를 통해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에서는 매년 납세자 인식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패널 자료는 가구 및 가구의 재정과 관련된 여러 자료가 누적되어 있고, 주거형태와 재산세 및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자료도 제공하고 있어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동안 재정패널 자료를 통한 납세자의 조세순응 등 전반적인 납세의식에 대한 분석은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부동산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납세자 의식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관련 변수와 납세자의

-
-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검색일자 : 2018. 5. 4.)

식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관련된 납세자의 의식을 파악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형태나 보유세 부담 정도 등과 납세자 의식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납세자 의식은 ① 세부담에 대한 인식, ② 증세기 세부담 의향, ③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해 분석하였으며, 관심변수는 ① 주거형태, ② 보유세 등 부담여부, ③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로 ④ 인구통계적 변수 등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와 각각의 납세자의식변수(종속변수)와 관심변수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종합해보면 첫째,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다는 것만으로 납세자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높을수록 여러 납세의식에 있어 부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본인의 세부담이 많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세부담에 비해 정부혜택도 많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었다. 셋째, 주거환경만족도나 월평균 주거비용이 납세자의식과 여러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환경만족도와 세부담을 결부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면적도 면적이 넓은 곳에 주거할수록 대체로 긍정적인 납세의식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재산세 납부여부나 부동산임대소득 유무가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았으나 재산세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의 절대량이 납세자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납세자의 납세순응이나 조세저항 등 납세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연구자료 및 모형을 소개하고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며, 제Ⅴ장에서 본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 및 한계점을 설명한다.

Ⅱ. 선행연구

조세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사항이지만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세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납세자의 조세와 관련된 납세의식, 납세순응성 등은 특히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많이 이루어져왔다.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조세순응성과 조세에 대한 태도 및 납세의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납세순응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성에 대한 연구는 Allingham and Sandmo(1972)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Allingham and Sandmo(1972)는 납세순응을 범죄경제학과 유사한 접근 관점에서 탈세행위를 분석하였다.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세율, 세무조사 적발률, 가산세율로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이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율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따라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였다. Friedland et al.(1978)은 실험연구를 통해 납세순응행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분석결과 세율이 낮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고, 세무조사보다는 가산세율을 높이는 것이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현진권(2005)이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순응행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와 가산세가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며, 조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납세순응 요소 중 하나인 조세문화의 내성적 특성을 추가 분석한 결과 조세문화 수준은 법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명호·심태섭(2008)은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납세순응태도를 크게 세금축소보고 인식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금축소보고 인식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세금축소보고에 보다 관대한 성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금납부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기혼자, 근로소득자, 연령이 높을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혼자, 젊은 연령대의 납세자, 소득이 높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태도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결방안으로는 납세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활용과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가 유지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납세는 국민적 의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명호(2016)는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과 납세순응행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등의 심리적요인과 납세순응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하려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도하며, 납세순응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높여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높일 경우 증세 없이도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배수진(2017)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연도와 선정 이후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성실납세자의 조건별 보상여부, 혜택유형과 조세순응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세무조사 면제를 조건 없이 제공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당

기소득을 보고했으며, 조건별 보상이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에도 높은 과세소득 보고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기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조건별 보상여부 및 혜택 유형을 상호작용효과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조건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경우 조세순응이 증가했고, 이는 세무조사 면제에서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이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혜택이 조건 없이 주어질 경우 당기에는 성실신고를 하지만 차기에 과세소득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고, 조건별 보상을 통해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민조(2017)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9차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위험이나 제3자 소득보고 여부가 성실납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규범의 영향이 클수록 자발적인 소득신고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납세자들의 다양한 행동특성을 고려할 경우 납세순응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납세의식 및 태도

조세가 신설될 때 납세자의 태도 및 의식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Erich Kirchler(1997)는 근로소득 관련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때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납세자와 받지 않는 납세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규범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수록 세금 신설에 보다 순응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이나 복지제도에 더욱 의존적일 수 있어 조세제도에 보다 순응적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Torgler and Schneider(2007)는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와 유럽가치관조사(EVS)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의식 결정의 문화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민주적인 태도 등이 납세의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위스는 재정적 만족도와 납세의식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에서는 윤성만·전병욱(2011)이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의식을 분석한 결과 공정경쟁의식, 공정경쟁기회 결과가 납세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납세자의 연령이 높거나 정규직 직업,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 때 납세의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전태영·변용환(2013)은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자부심,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 신앙심, 준법성 및 조세공평성 그리고 인구통계적 변수와 납세의식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준법성이 강하거나,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신영효(2016)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통일세라는 새로운 세목이 신설될 경우 납세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 교육수준이 높거나 공적연금납부액이 많은 납세자일수록 통일세 신설이나 추가 세부담에 긍정적인 의향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평균 근로시간이 많거나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혜택이 낮다고 느끼는 납세자일수록 통일세라는 새로운 세목 신설과 추가 세부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통일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려면 납세자의 경제·사회적 요인과 납부세금 대비 정부혜택, 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에 대한 평가 등 납세자의 인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새로운 세목 신설시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소득 보장과 같은 기본 복지정책 확립 등이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신나리 외(2017)는 조세와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교환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5차 재정패널 자료의 통일세 납세의향과 복지재정지출 선호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저축성향과 통일세에 대한 선호도가 음의 관계를 보여 사회적재화의 소비 및 저축행태가 불확실한 공공서비스에서 유지되지 않고, 경제적 요인외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조세제도의 공평성과 통일세 선호도는 양의 관계를 보여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통일세에 대한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필현·김민정(2018)은 지방세 납세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납세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세의 필요성, 부과 근거 등에 동의하는 납세자가 절반 이하였고, 지방세 인상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거나 재산규모가 클수록 지방세를 당연히 내야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최상위층 계급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방세의 필요성과 부과근거에 있어서도 소득 및 재산규모가 최상위층에 속하는 계급에서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재산규모가 클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치단체에 대한 인식과 조세부담의 적정성과 관련된 제도의 합리성이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비해 지방세 인상에 대해 동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를 함께 본 연구로는 김영락(2014)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의식이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에 대해 각각 3개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충성도나 무행동 성향이 높았고, 당위성이 낮다고 보는 사람들의 불평행동과 무행동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규·김진찬(2018)은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에 대한 납세윤리 부분이 지방세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며,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불평행동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납세자들의 세무신고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눠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한 배수진·심태섭(2011)에 따르면 이러한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크게 조세 제도적 요인과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비경제적 요인은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은 정책당국의 조세정책, 조세구조나 시스템 등을 의미하는 조세 제도적 요인과, 납세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각각의 특정한 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으로 구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³⁾

〈표 1〉 납세자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요인			
요인	구 분		관련 변수
조세 제도적	제재	세금에 대한 부담	세율, 공정성, 위험선호도, 소득확득방법
		적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적발확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점, 세무조사 후 조세순응
		처벌	가산세율
	세무행정 및 세무관련 정보	정보공개	세무조사가능성의 공개, 다른 납세자의 탈세정보의 공개, 평균신고소득률에 대한 정보, 세무조사대상여부의 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공개
		공식적·비공식적 정보	공식적 정보(세무조사가능성, 세무조사결과) 비공식적 정보(납세자간 의사소통)
	보상	금전적·비금전적 혜택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세무조사면제 등)
	조세시스템	복잡성	복잡성, 공정성, 조세회피기회
		불확실성	제도적 불확실성(세무조사 가능성, 가산세율, 세율 등)
개인의 경제상황	소득수준		소득수준
	소득원천		사업소득(높은 조세회피기회), 그 외의 소득(낮은 조세회피기회)

3) 배수진·심태섭(2011),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 세무학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p.220.

〈표 1〉 납세자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속)

비경제적 요인			
요인	구 분		관련 변수
개인적	인구통계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지식), 경험
심리적	태도	윤리적 태도	도덕발달수준(윤리수준), 통제원천(성격변수), 윤리적 신념(성향), 윤리적 평가, 조세회피기회, 사회적 가치관
	인지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교환적 공평성(정부서비스, 공공재)
사회·문화적	사회적 가치관	사회·문화·국가 간 차이	사회적 가치관
	윤리적 권고		도의적 호소, 처벌 위험, 윤리적 메시지, 사회적 책임의 호소, 윤리적 권고 등

자료 : 배수진·심태섭(2011) 연구 정리하여 작성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납세자 개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개인적·심리적·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 중에서도 심리적·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

이처럼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태도 및 납세의식, 납세순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 주제와 자료를 바탕으로 많이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소득수준이나 사업 소득 등 일부 소득원천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 외에 납세자의 구체적인 경제상황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경제상황 중에서도 재산세 납부액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 특정 세목이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보유형태나 상속·증여재산 유무와 같은 납세자의 구체적 특성에 따른 납세의식을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납세자의 주거현황이나 보유세 등 세부담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와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연구자료 및 모형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4) 배수진·심태섭(2011), 위의 논문, p.236.

주택 보유형태 및 보유세 부담 여부와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거형태, 보유세 등 부담여부, 상속·증여나 기타 주거 관련 변수, 인구통계적 변수 등이 납세자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 적합할 수 있으나 개인 수준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거현황과 보유세, 소득 등 개인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는데 일반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조사된 자료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재정패널자료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되었고, 조사대상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납세자)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조사되어 있으며, 납세자 의식에 대한 것도 가구주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자료도 정제되었으며, 납세자 의식에 대한 설문문항도 계속 발전 및 변화되었기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도출하기에 신뢰도 및 타당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자료라 판단된다.

재정패널 자료 중 납세자의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자료는 매년 설문항목이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항목이 있다. 재산세 고지 금액도 제7차년도(2014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납세의식 조사는 9차년도부터 조사문항이 새롭게 신설되어 조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9차년도와 10차년도를 분석대상연도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가. 종속변수 : 납세자 의식

본 연구에서는 주거형태나 보유세 등 부담여부, 상속·증여재산 유무와 같이 납세자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특징들과 납세자 의식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패널에서는 여러 문항을 통해 납세자 의식에 대해 다각도로 매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다양한 납세의식을 분석하여 보유세 등이 인상되었을 때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세금 신고나 본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인식, 증세기 추가 세 부담에 대한 의향 등으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세 부담의 인식에 대해 본인이 납부한 세금 정도에 대한 인식과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 혜택에 대한 인식, 본인소득과 비슷한 납세자그룹과 비교한 본인의 세 부담에 대한 인식(수평적 공평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보유세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추가 세 부담을 가정한 납세자 의식 조사가 있다면 좋겠으나 이와 관련된 직접적 설문조사는 시행된 바 없다. 다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시 응답자들의 추가 세 부담 의향을 조사한 문항이 있다. 간접적이지만 본 문항을 통해 납세자들이 증세 시 추가 세 부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할 수 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나 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을 방지할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보다 확장해보면 부의 쏠림 현상, 소득격차 심화를 방지하는 정책

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⁵⁾ 고소득자나 재산보유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세의 기능 중 하나인 수직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만약 응답자가 소득격차가 있다고 느낄 경우 조세의 기능에서 수직적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증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도 추가 분석한다.

〈표 2〉 분석에 사용한 변수 : 종속변수(납세자 인식)

구 분		내 용	조사연도
세 부담에 대한 인식	본인 세금 납부 정도	① 매우 많이 납부함~⑤ 매우 적게 납부함	제9, 10차
	본인 납부 세금과 정부혜택에 대한 인식	① 매우 높은 수준~⑤ 매우 낮은 수준	
	본인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그룹과 비교한 본인의 세 부담에 대한 인식	① 세 부담이 매우 높음~⑤ 세 부담이 매우 낮음	
증세시 세 부담 의향	복지 수준 확대 위한 증세시, 추가 부담 의향	① 추가 부담 의향 없음~⑤ 현재 세금의 15%이상 부담 의향 있음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① 매우 큼~⑤ 전혀 크지 않음	
	우리나라 향후 계층 간 소득 격차	① 매우 커질 것~⑤ 매우 작아질 것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중요한 것(정책 vs 노력)	① 정부 정책~⑤ 개인 노력	

나. 관심변수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들의 주거현황 및 보유세와 납세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관심변수를 크게 ① 주거형태, ② 보유세 등 부담여부, ③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내용, ④ 인구통계적 변수 및 소득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⁶⁾ 거주형태는 응답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

5) 최승문(2018)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안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만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며, 부동산 보유세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로, 국가 자본을 생산적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며, 부동산으로 발생한 자산격차 확대를 완화하는 효율적 조세라고 설명한다.

6)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관심변수는 ① 주거형태, ② 보유세 등 부담여부, ③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내용이며, ④ 인구통계적 변수 및 소득은 기본적으로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선행연구(Lewis 1982 ; Jackson and Milliron 1986 ; Torgler 2004 ; 전태영·변용환 2013 ; 강민조 2017 등) 에서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기타로 구분했고, 점유형태는 자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제곱미터(m^2) 단위로 측정한 거주면적과 거주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응답자도 분류하여 납세의식을 알아본다.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현재 보유세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중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표 3〉 분석에 사용한 변수 : 관심변수 및 통제변수

구 분		설문대상	내 용
주거형태	거주형태	가구	1=아파트, 0=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및 기타
	점유형태	가구	1=자가, 0=전세, 월세 및 기타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가구	1=거주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 0=나머지
	거주면적	가구	거주주택의 주택 및 전용면적(단위 : m^2)
	서울·경기×기준시가 6억원 이상	가구	1=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거주주택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경우, 0=나머지
보유세 등 부담여부	재산세 유무	가구	1=재산세 연간고지금액 있음, 0=재산세 없음
	재산세 금액	가구	재산세 연간고지금액(단위 : 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여부	가구원	1=부동산임대소득 있음, 0=없음
	부동산 임대소득	가구원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단위 : 만원)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가구원	부동산 자산 및 기타자산(금융자산 제외, 단위 : 만원)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상속·증여재산 유무	가구	1=조사연도까지 상속·증여재산이 있음, 0=없음
	주거환경 만족도	가구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월평균 주거비용	가구	월평균 주거비용(주택관리비, 수도·전기료 등)
인구통계적 변수 및 소득 (통제변수)	성별	가구원	1=남자, 0=여자
	연령	가구원	만 나이
	혼인상태	가구	1=기혼, 0=미혼 및 기타
	교육수준	가구원	0=없음,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이상
	종사상지위	가구원	1=상용직, 0=임시, 일용직, 자영업 및 기타
	연간순소득	가구원	연간총소득-연간총지출
	순자산	가구	가구총자산-가구총부채

이에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추가 분석한다.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지역별 재산세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재산세액의 대략 58.2%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이 수도권에 집중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최승문, 2018).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며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다.

보유세 등 부담여부에 따른 납세의식은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재정패널에서는 재산세 납부금액, 종합부동산세 고지금액,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등을 매년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유세 등 부담여부와 납세의식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고지금액은 해당되는 응답자 수가 적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도 납세의식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응답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상속·증여 재산유무에 따른 납세의식을 분석했다.⁷⁾ 또한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나 월평균 주거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주택관리비, 수도·전기료 등)도 납세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 같이 분석한다.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특성이나 나이, 성별, 교육수준 등 인구통계적 특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여 납세자 의식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대부분 순서화된 형태의 리커트형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귀분석을 활용할 경우 올바른 분석결과와 해석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짓모형보다 발전된 형태의 순서화 로짓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순서화 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이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서화된 다항일 경우 분석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래의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인 납세자 인식 변수는 그 문항이 대부분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이에 순서화 로짓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간단히 설명하면 종속변수에는 납세자의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항목을 설정하고 독립(관심)변수는 크게 ① 주거형태, ② 보유세 등 부담여부, ③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내용, ④ 통제변수(인구통계적 변수 및 소득)로 구성하여 분석한다.⁸⁾

7)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특징상 매년 연속해서 받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3차년도, 증여재산은 4차년도부터 조사되었기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9차년도와 10차년도까지 각각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상속·증여재산 유무를 측정했다. 예를 들어 3차년도에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가 없더라도 9차년도에는 지금까지 상속재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8)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관련 변수와 납세의식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납세자 의식을 파악하고 조

[연구모형]

$$Y_i = \beta_0 + \beta_1(\text{주거 형태})_i + \beta_2(\text{보유세 등 부담 여부})_i \\ + \beta_3(\text{상속 · 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_i + \beta_4(\text{통제 변수})_i + \epsilon_i$$

- 주거형태 : 거주형태, 점유형태,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거주면적, 서울 · 경기도 소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 보유세 등 부담여부 : 재산세 유무, 재산세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 상속 · 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 상속 · 증여재산 유무, 주거환경 만족도, 월평균 주거비용
- 통제변수(인구통계적 변수 및 소득) :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연간순소득, 순자산

2. 기초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자료의 9차 및 10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인 납세자 의식과 관심변수들이 모두 존재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총 14,497개의 자료를 확보,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을 연속형과 범주형으로 구분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보면 분석대상 응답자들의 거주면적 평균은 53.68m²였고, 표준편차는 45.17m²이고, 최대값은 429m²로 나타났다. 재산세금액은 평균이 32.2만원이고, 표준편차가 165.83만원이었으며, 최대값은 1억 11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금액의 중간값은 10만원으로 평균 및 최대값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아 분석대상 중 재산세는 다소 일부에 편중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금융 자산 제외, 이하 같음)의 경우 이 같은 분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부동산임대소득의 평균은 89.72만원이나 중간값은 0원이고, 최대값은 3억 6,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도 평균은 3억 8,611만원, 중간값은 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422억원에 달했다. 월평균 주거비용 평균은 11.83만원, 중간값도 12만원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2.83세였으며, 연간순소득 평균은 644.67만원, 순자산 평균은 3억 48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그 동안 납세의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와 같이 부동산 관련 변수와 납세의식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이 다양한 주거현황 및 보유세와 관련된 변수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저항 최소화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으므로 별도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본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표 4〉 기초통계분석 : 연속형 변수

(단위 : 만원)

구 분	Mean	Std.Dev.	Min	Median	Max	Obs.
거주면적(단위 : m ²)	53.68	45.17	0	59.4	429	14,497
재산세금액	32.20	165.83	0	10	10,011	
부동산임대소득	89.72	705.74	0	0	36,000	
부동산 및 기타 자산	38,611.49	78,608.03	0	20,000	4,220,000	
월평균 주거비용	11.83	10.47	0	12	285	
연령	52.83	15.68	0	52	103	
연간순소득	644.67	2,442.75	-27,439.2	215.3999	52,078.47	
순자산	30,482.17	73,887.06	-86,576	13,000	3,785,000	

범주형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형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83.04%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점유형태도 자가인 경우가 64.89%에 달했다.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4.72%에 불과했으며, 서울·경기에 소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전체 중 3.74%에 달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서울·경기에 소재하는 경우가 전체 중 대략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응답자는 점유형태가 자가인 비율과 유사하게 68.96%로 조사되었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37%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6.99%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약간 만족이 52.13%를 차지했고, 보통 이상이 95.37%에 달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54.42%, 여자가 45.58%였고, 기혼자가 전체의 80.15%를 차지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42.81%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3.63%, 중졸 이하가 23.55%로 구성되었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과 기타로 구분했는데 상용직으로 종사하는 응답자가 43.74%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 의식에 대한 7개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각 문항별 응답 빈도수와 비율은 지면 관계상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5> 기초통계분석 : 범주형 변수

구 분		빈도수		
		항목별	비율(%)	전체
거주형태	아파트	12,038	83.04	14,497
	기타	2,459	16.96	
점유형태	자가	9,407	64.89	
	기타	5,090	35.11	
기준시가 6억원 이상	6억원 이상	684	4.72	
	6억원 미만	13,813	95.28	
서울·경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서울·경기×기준시가 6억원 이상	542	3.74	
	기타	13,955	96.26	
재산세 유무	재산세 있음	9,997	68.96	
	재산세 없음	4,500	31.04	
부동산임대소득 여부	있음	919	6.34	
	없음	13,578	93.66	
상속·증여재산	있음	2,463	16.99	
	없음	12,034	83.01	
주거환경 만족도	매우 만족	725	5.00	
	약간 만족	7,558	52.13	
	보통	5,544	38.24	
	약간 불만족	596	4.11	
	매우 불만족	74	0.51	
성별	남자	7,889	54.42	
	여자	6,608	45.58	
혼인상태	기혼	11,620	80.15	
	기타	2,877	19.85	
교육수준	없음	2	0.01	
	중졸 이하	3,414	23.55	
	고졸	4,875	33.63	
	전문대졸 이상	6,206	42.81	
종사상 지위	상용직	6,341	43.74	
	기타	8,156	56.26	

3. 상관관계 분석

실증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상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이 다소 많기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체로 0.1 이하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변수와 서울·경기이면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변수간에 0.886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점유형태와 재산세 유무도 0.833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와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도 0.489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밖의 관심변수 중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가 거의 없었으며, 통제변수 중 일부에서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9) 일부 관심변수 중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어 실증분석시 VIF(분산확대지수)를 통해 이를 검증해보았다. 관심변수와 통제변수의 VIF 평균은 2.45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1~2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고, 일부 변수(부동산 및 기타자산금액 : 7.34, 순자산 : 7.06, 기준시가 6억원 이상 : 4.85)만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VIF의 경우 통상적으로 10보다 작을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형과 실증분석 결과에 있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상관관계 분석

	본인세금 납부	납부세금과 정부혜택	세부담 수평적공평성	중세시 세부담	소득격차	향후 소득격차	격차 줄이려는 노력	거주형태	집유형태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거주면적	서울·경기 & 기준시가 6억원 이상
납부세금과 정부혜택	-0.286 ^{***}											
세부담	0.611 ^{***}	-0.243 ^{***}										
수평적공평성	0.008	0.046 ^{***}	0.018 ^{***}									
중세시 세부담	0.052 ^{***}	-0.186 ^{***}	0.026 ^{***}	-0.044 ^{***}								
소득격차	0.065 ^{***}	-0.177 ^{***}	0.049 ^{***}	-0.045 ^{***}	0.644 ^{***}							
향후 소득격차	0.035 ^{***}	-0.155 ^{***}	0.032 ^{***}	-0.033 ^{***}	0.354 ^{***}	0.380 ^{***}						
격차 줄이려는 노력	-0.018 ^{**}	-0.021 ^{**}	-0.011 ^{**}	-0.001 ^{**}	0.008	-0.016 [*]	-0.026 ^{***}					
거주형태	-0.051 ^{***}	-0.016 ^{**}	-0.033 ^{***}	0.002 ^{**}	0.003	-0.009 ^{**}	-0.011 ^{**}	0.155 ^{***}				
집유형태	-0.094 ^{***}	0.085 ^{***}	-0.091 ^{***}	0.011 ^{**}	-0.008	-0.013 ^{**}	0.015 [*]	0.031 ^{***}	0.164 ^{***}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148 ^{***}	0.091 ^{***}	-0.129 ^{***}	0.103 ^{***}	-0.010	-0.031 ^{***}	-0.020 ^{***}	-0.080 ^{***}	0.151 ^{***}	0.126 ^{***}		
거주면적	-0.091 ^{***}	0.087 ^{***}	-0.090 ^{***}	-0.001 ^{**}	-0.013	-0.024 ^{***}	0.006	0.056 ^{***}	0.145 ^{***}	0.886 ^{***}	0.086 ^{***}	
서울·경기 &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070 ^{***}	-0.004 ^{***}	-0.045 ^{***}	0.015 [*]	0.000	-0.021 ^{**}	-0.012 ^{**}	0.160 ^{***}	0.833 ^{***}	0.140 ^{***}	0.149 ^{***}	0.123 ^{***}
재산세 유무	-0.035 ^{***}	0.039 ^{***}	-0.046 ^{***}	0.009 ^{**}	-0.023 ^{***}	-0.028 ^{***}	0.017 ^{**}	0.013 ^{**}	0.102 ^{***}	0.216 ^{***}	0.086 ^{***}	0.210 ^{***}
재산세 금액	-0.032 ^{***}	0.044 ^{***}	-0.020 ^{**}	0.019 ^{**}	0.005	0.004 ^{**}	0.023 ^{***}	0.035 ^{***}	0.098 ^{***}	0.164 ^{***}	0.027 ^{***}	0.134 ^{***}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0.053 ^{***}	0.043 ^{***}	-0.047 ^{***}	0.017 ^{**}	-0.002	0.010	0.017 ^{**}	0.003 ^{**}	0.052 ^{***}	0.179 ^{***}	0.058 ^{***}	0.136 ^{***}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0.142 ^{***}	0.123 ^{***}	-0.133 ^{***}	0.038 ^{***}	-0.020 ^{**}	-0.033 ^{***}	0.006	0.079 ^{**}	0.115 ^{***}	0.313 ^{***}	0.179 ^{***}	0.295 ^{***}
부동산 및 기타자산금액	-0.014 ^{**}	0.043 ^{***}	-0.013 ^{**}	0.040 ^{***}	-0.031 ^{***}	-0.040 ^{***}	-0.032 ^{***}	0.056 ^{***}	0.088 ^{***}	0.043 ^{***}	-0.019 ^{**}	0.051 ^{***}
상속 & 증여여부	0.082 ^{***}	0.012 ^{**}	0.075 ^{***}	-0.038 ^{***}	-0.022 ^{***}	-0.018 ^{**}	-0.072 ^{***}	-0.159 ^{***}	-0.181 ^{***}	-0.102 ^{***}	-0.200 ^{***}	-0.085 ^{***}
주거환경 만족도	-0.083 ^{***}	0.059 ^{***}	-0.096 ^{***}	-0.029 ^{***}	0.004	-0.026 ^{***}	-0.016 [*]	-0.024 ^{***}	0.072 ^{***}	0.079 ^{***}	-0.042 ^{***}	0.056 ^{***}

〈표 6〉 상관관계 분석 (계속)

	본인세금 납부	납부세금과 정부혜택	세부담 수평적공평성	중세시 세부담	소득격차	향후 소득격차	격차 줄이려는 노력	거주형태	점유형태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거주면적	서울·경기& 기준시가 6억원이상
성별	-0.111 ^{***}	0.051 ^{***}	-0.091 ^{***}	0.081 ^{***}	-0.017 ^{***}	-0.018 ^{***}	0.009	0.021 ^{***}	0.040 ^{***}	0.048 ^{***}	0.070 ^{***}	0.048 ^{***}
연령	0.208 ^{***}	-0.155 ^{***}	0.163 ^{***}	-0.165 ^{***}	0.007	0.043 ^{***}	-0.011	0.083 ^{***}	0.163 ^{***}	0.017 ^{***}	-0.193 ^{***}	0.012
혼인상태	-0.133 ^{***}	0.070 ^{***}	-0.108 ^{***}	0.078 ^{***}	-0.034 ^{***}	-0.060 ^{***}	0.002	0.102 ^{***}	0.242 ^{***}	0.079 ^{***}	0.204 ^{***}	0.072 ^{***}
교육수준	-0.242 ^{***}	0.187 ^{***}	-0.206 ^{***}	0.203 ^{***}	-0.027 ^{***}	-0.049 ^{***}	0.015 ^{***}	-0.001	-0.075 ^{***}	0.119 ^{***}	0.318 ^{***}	0.118 ^{***}
종사장 지위	-0.223 ^{***}	0.113 ^{***}	-0.185 ^{***}	0.145 ^{***}	0.001	-0.014 ^{***}	0.037 ^{***}	-0.012	-0.027 ^{***}	0.026 ^{***}	0.194 ^{***}	0.030 ^{***}
연간 순소득	-0.033 ^{***}	-0.015 ^{***}	-0.030 ^{***}	0.011	-0.001	0.005	-0.005	0.024 ^{***}	0.063 ^{***}	0.002 ^{***}	0.049 ^{***}	0.001
순자산	-0.129 ^{***}	0.118 ^{***}	-0.122 ^{***}	0.039 ^{***}	-0.029 ^{***}	-0.039 ^{***}	-0.002	0.071 ^{***}	0.110 ^{***}	0.275 ^{***}	0.172 ^{***}	0.255 ^{***}

	재산세 유무	재산세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부동산 및 기타자산 금액	상속&증여 여부	주거환경 만족도	월평균 주거비용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장 지위	연간 순소득
재산세 금액	0.130 ^{***}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0.161 ^{***}	0.146 ^{***}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0.078 ^{***}	0.201 ^{***}	0.489 ^{***}											
부동산 및 기타자산금액	0.199 ^{***}	0.343 ^{***}	0.274 ^{***}	0.372 ^{***}										
상속 & 증여여부	0.123 ^{***}	0.036 ^{***}	0.090 ^{***}	0.063 ^{***}	0.109 ^{***}									
주거환경 만족도	-0.180 ^{***}	-0.064 ^{***}	-0.042 ^{***}	-0.037 ^{***}	-0.143 ^{***}	-0.030 ^{***}								
월평균 주거비용	0.079 ^{***}	0.037 ^{***}	0.049 ^{***}	0.046 ^{***}	0.096 ^{***}	0.023 ^{***}	0.053 ^{***}							
성별	0.044 ^{***}	0.024 ^{***}	0.039 ^{***}	0.039 ^{***}	0.059 ^{***}	-0.005 ^{***}	-0.025 ^{***}	0.029 ^{***}						
연령	0.167 ^{***}	0.027 ^{***}	0.135 ^{***}	0.055 ^{***}	0.009	0.035 ^{***}	0.018 ^{***}	-0.014 ^{***}	-0.036 ^{***}					
혼인상태	0.260 ^{***}	0.059 ^{***}	0.030 ^{***}	0.029 ^{***}	0.139 ^{***}	0.018 ^{***}	-0.117 ^{***}	0.120 ^{***}	0.203 ^{***}	-0.112 ^{***}				
교육수준	-0.044 ^{***}	0.052 ^{***}	-0.020 ^{***}	0.025 ^{***}	0.141 ^{***}	0.013 ^{***}	-0.082 ^{***}	0.030 ^{***}	0.206 ^{***}	-0.619 ^{***}	0.206 ^{***}			
종사장 지위	-0.023 ^{***}	-0.012 ^{***}	-0.091 ^{***}	-0.056 ^{***}	0.004 ^{***}	-0.030 ^{***}	-0.063 ^{***}	0.000	0.135 ^{***}	-0.497 ^{***}	0.127 ^{***}	0.447 ^{***}		
연간 순소득	0.050 ^{***}	-0.016 ^{***}	0.007 ^{***}	0.013 ^{***}	0.020 ^{***}	-0.036 ^{***}	-0.047 ^{***}	-0.027 ^{***}	-0.005 ^{***}	-0.053 ^{***}	0.036 ^{***}	0.041 ^{***}	0.132 ^{***}	
순자산	0.179 ^{***}	0.306 ^{***}	0.285 ^{***}	0.371 ^{***}	0.918 ^{***}	0.100 ^{***}	-0.114 ^{***}	0.171 ^{***}	0.052 ^{***}	0.001	0.119 ^{***}	0.125 ^{***}	0.009	0.023 ^{***}

IV. 실증분석 결과

1. 기본분석

순서화 로짓분석을 통해 설정한 연구모형을 납세자의식 문항별로 각각 분석했다. 분석대상 전체와 자녀 등을 제외한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하였으며, 지면관계상 전체를 분석한 결과만 제시한다.¹⁰⁾ 또한 모형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계효과를 계산하였으며, 재산세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연간순소득, 순자산은 해석의 편의를 위해 100만원 단위로 수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형태나 보유세 등 부담여부가 본인의 세부담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세 가지 납세자 의식에 대한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본인의 세금 납부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거주면적이 넓을수록, 서울·경기에 소재하면서 거주하는 자가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납세자일수록,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일수록,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이 많을수록, 월평균 주거비용이 높을수록 현재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많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재산세 금액이 많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납세자일수록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적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거나 월평균 주거비용 등 현재 지출되는 비용이 있거나 많을 경우 현재의 세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서울·경기에 소재하면서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현재 본인부담 세금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주거환경 만족도의 경우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인의 세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며, 불만족스러울수록 세부담이 낮다고 인식할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본인의 세부담 차이에서 발생했다고 인식함에 따른 결과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이 세금을 많이 부담함에 따라 주거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할 수도 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많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는데, 재산세 금액의 경우 재산세 납부 금액이 많아질수록 납부하는 세금이 적다고 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본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다고 느끼는 경향이 보다 강하지만 재산세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일부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납세자들은 현재의 세부담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전체, 자녀 등을 제외한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만을 각각 나눠 분석한 결과, 일부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차이나는 했으나 대체로 분석결과가 일치하였다.

〈표 7〉 실증분석 결과 I-1 : 세부담에 대한 인식(본인세금 납부 정도)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주거형태	거주형태	-0.0540 (-1.1879)			-0.0349 (-0.7548)
	점유형태	-0.1346*** (-3.5743)			0.0024 (0.0377)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0974 (-0.5775)			0.0415 (0.2444)
	거주면적	-0.0020*** (-4.9535)			-0.0020*** (-4.8465)
	서울·경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3173* (-1.7011)			-0.3592* (-1.9169)
보유세 등 부담여부	재산세 유무		-0.2025*** (-5.2046)		-0.1474** (-2.1989)
	재산세 금액		0.0247** (2.1808)		0.0296*** (2.6564)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0.0678 (-0.8411)		-0.0743 (-0.9178)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0.0042 (-1.4300)		-0.0040 (-1.4028)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0.0005*** (-7.8465)		-0.0004*** (-6.9383)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상속·증여재산 유무			-0.0051 (-0.1148)	0.0241 (0.5347)
	주거환경 만족도			0.1479*** (5.8423)	0.1003*** (3.8266)
	월평균 주거비용			-0.0105*** (-5.0769)	-0.0114*** (-5.3587)
인구통계적 변수 및 소득	성별	-0.2183*** (-6.3030)	-0.2135*** (-6.1628)	-0.2167*** (-6.2611)	-0.2208*** (-6.3587)
	연령	0.0116*** (7.8700)	0.0122*** (8.2572)	0.0103*** (7.1268)	0.0126*** (8.4613)
	혼인상태	-0.2272*** (-4.9579)	-0.2295*** (-5.0362)	-0.2564*** (-5.7373)	-0.1647*** (-3.5382)
	교육수준	-0.2383*** (-8.1242)	-0.2575*** (-8.9747)	-0.2693*** (-9.4190)	-0.2160*** (-7.3241)
	종사상지위	-0.4761*** (-12.0578)	-0.4992*** (-12.6230)	-0.4936*** (-12.5117)	-0.4883*** (-12.3083)
	연간순소득	-0.0001 (-0.2157)	-0.0002 (-0.3219)	-0.0003 (-0.4077)	-0.0001 (-0.1739)
	순자산	-0.0003*** (-9.2240)	0.0001** (2.3560)	-0.0003*** (-10.2093)	0.0002*** (2.7265)
Log likelihood		-14485.6	-14469.638	-14491.799	-14429.153
Pseudo R ²		0.0497	0.0507	0.0492	0.0534
N		14,497			

주 : 1) Model I ~ III은 관심변수 그룹별 분석, Model IV는 전체 관심변수 분석을 나타냄(이하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한계효과¹¹⁾를 살펴보면 서울·경기에 소재하면서 거주하는 자가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납세자는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 비해 본인이 세금을 매우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1.65%p 높았으며, 약간 많이 납부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7.1%p 높았다. 또한 적절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7.25%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거나 상용직에 근무하는 납세자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재산세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한계효과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8〉 한계효과 : 본인 세금 납부 정도

구 분	매우 많이 납부	약간 많이 납부	적절하게 납부	약간 적게 납부	매우 적게 납부
거주면적	0.0001***	0.0004***	-0.0004***	-0.0001***	0.0000***
서울·경기×기준시가 6억원 이상	0.0165***	0.0710***	-0.0725***	-0.0115***	-0.0035***
재산세 유무	0.0056***	0.0290***	-0.0273***	-0.0056***	-0.0017***
재산세 금액	-0.0012***	-0.0058***	0.0056***	0.0011***	0.0003***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0.0000***	0.0001***	-0.0001***	0.0000***	0.0000***
주거환경 만족도	-0.0039***	-0.0198***	0.0189***	0.0037***	0.0011***
월평균 주거비용	0.0004***	0.0022***	-0.0021***	-0.0004***	-0.0001***
성별	0.0086***	0.0434***	-0.0412***	-0.0083***	-0.0025***
연령	-0.0005***	-0.0025***	0.0024***	0.0005***	0.0001***
혼인상태	0.0062***	0.0323***	-0.0301***	-0.0064***	-0.0019***
교육수준	0.0085***	0.0426***	-0.0406***	-0.0080***	-0.0024***
종사상지위	0.0199***	0.0959***	-0.0926***	-0.0178***	-0.0054***
순자산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본인 납부 세금과 정부혜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인납부 세금에 대한 정부혜택 정도에 대해서는 관심변수 대부분이 낮은 수준이라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거주면적이나 서울·경기에 소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살고 있는 납세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 부동

11) 한계효과는 각각의 설명변수에 대하여 변수 한 단위 증가 시 응답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귀분석의 추정치를 활용하여 구한 것이다.

산 및 기타 자산 금액이 많을수록,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있는 납세자, 주거환경에 불만족스럽거나, 월평균 주거비용이 높을수록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혜택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보유세 등 부담여부만을 살펴본 Model II의 결과를 살펴보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일수록 본인 납부 세금에 비해 정부혜택이 높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일수록(재산세를 내지 않는 납세자는) 본인 납부 세금 대비 정부혜택이 높은 수준(정부 혜택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현재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본인의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세부담이 높지만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혜택도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할 확률도 높았다. 전반적으로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던 것에 비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높은 수준이지만 이와 비례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도 높다고 응답한 것이다. 재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정부혜택이 적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정부혜택을 복지 지출을 늘려달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¹²⁾ 정부혜택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을 복지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응답으로 판단해 본다면, 정부혜택이 높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복지 지출을 늘리지 말자고 응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과를 분석해보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정부의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복지 지출을 늘리지 말자고 하기 위해 현재의 정부혜택이 높다고 응답했을 수 있다. 거주면적이나 서울·경기에 소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곳에 살고 있는 납세자,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있는 납세자 등의 변수에 대한 결과는 정부혜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은 세금에 비하여 정부 혜택이 적다는 의미로 답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재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기 위하여(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하여) 정부 혜택이 많다(정부 혜택이 적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계효과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문항에 있어서는 응답확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적절한 수준, 약간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서는 변수별 응답확률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조세제도에 관한 질문과 함께 복지제도와 연계한 문항을 구성하여 납세자의 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나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 등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정부혜택에 관한 응답에 있어서도 복지지출을 인식하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표 9> 실증분석 결과 I-2: 세부담에 대한 인식(본인 납부 세금과 정부혜택)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주거형태	거주형태	-0.1180*** (-2.7617)			-0.0897** (-2.0618)
	점유형태	-0.0698** (-1.9679)			-0.0165 (-0.2710)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0065 (0.0379)			-0.0351 (-0.2040)
	거주면적	0.0008** (2.1801)			0.0013*** (3.2737)
	서울·경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4760** (2.5488)			0.4526** (2.4195)
보유세 등 부담여부	재산세 유무		-0.0770** (-2.1018)		-0.0694 (-1.0925)
	재산세 금액		-0.0077 (-0.8210)		-0.0119 (-1.2762)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0.2425*** (3.2160)		0.2263*** (2.9978)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0.0031 (-1.0979)		-0.0036 (-1.3052)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0.0003*** (5.1825)		0.0003*** (4.5353)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상속·증여재산 유무			0.1435*** (3.4167)	0.1446*** (3.4114)
	주거환경 만족도			0.0991*** (4.2076)	0.1086*** (4.4522)
	월평균 주거비용			0.0054*** (2.8325)	0.0057*** (2.9553)
인구통계적 변수 및 소득	성별	0.0480 (1.4628)	0.0461 (1.4051)	0.0479 (1.4609)	0.0459 (1.3952)
	연령	-0.0088*** (-6.3540)	-0.0093*** (-6.7043)	-0.0089*** (-6.5151)	-0.0093*** (-6.7140)
	혼인상태	0.1070** (2.5137)	0.0994** (2.3455)	0.0903** (2.1769)	0.0896** (2.0755)
	교육수준	0.2520*** (9.0766)	0.2629*** (9.6890)	0.2798*** (10.3525)	0.2378*** (8.5278)
	종사상지위	0.1163*** (3.0791)	0.1313*** (3.4760)	0.1306*** (3.4623)	0.1322*** (3.4912)
	연간순소득	-0.0021*** (-3.2736)	-0.0022*** (-3.3207)	-0.0021*** (-3.1750)	-0.0020*** (-3.0372)
	순자산	0.0003*** (10.4177)	0.0001 (1.0020)	0.0003*** (11.8657)	0.0000 (0.7933)
Log likelihood		-17142.346	-17145.959	-17146.77	-17107.572
Pseudo R ²		0.0248	0.0246	0.0246	0.0268
N		14,497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표 10〉 한계효과 : 본인 납부 세금과 정부혜택

구 분	매우 높은 수준	약간 높은 수준	적절한 수준	약간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
거주형태	0.0004***	0.0079***	0.0137***	-0.0147***	-0.0072***
거주면적	0.0000***	-0.0001***	-0.0002***	0.0002***	0.0001***
서울·경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0015***	-0.0347***	-0.0761***	0.0700***	0.0423***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0.0009***	-0.0189***	-0.0361***	0.0365***	0.0193***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상속·증여재산 유무	-0.0006***	-0.0126***	-0.0223***	0.0237***	0.0118***
주거환경 만족도	-0.0005***	-0.0098***	-0.0162***	0.0179***	0.0085***
월평균 주거비용	0.0000***	-0.0005***	-0.0009***	0.0009***	0.0004***
연령	0.0000***	0.0008***	0.0014***	-0.0015***	-0.0007***
혼인상태	-0.0004***	-0.0083***	-0.0131***	0.0148***	0.0069***
교육수준	-0.0010***	-0.0214***	-0.0355***	0.0393***	0.0187***
종사상지위	-0.0005***	-0.0119***	-0.0199***	0.0218***	0.0105***
연간순소득	0.0000***	0.0002***	0.0003***	-0.0003***	-0.0002***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사한 소득을 벌고 있는 납세자에 비해서 본인의 세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납세자 인식의 응답은 대체로 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면적이 넓거나 서울·경기에 소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살고 있거나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이 많거나 월평균 주거비용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유사 소득그룹에 비해서 본인의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주거환경에 불만족스러울수록 유사소득 대비 세부담이 낮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앞서 본인의 세부담에 대해서도 주거환경에 불만족일수록 세부담이 낮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는데, 두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거환경에 불만족일수록 절대적인 본인의 세부담도 낮으며, 유사소득 그룹에 비해서도 세부담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본인의 주거환경과 세부담을 결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11> 실증분석 결과 I-3 : 세부담에 대한 인식(세부담의 수평적 공정성)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주거형태	거주형태	-0.0309 (-0.6711)			-0.0077 (-0.1632)
	점유형태	-0.0541 (-1.4154)			-0.0002 (-0.0024)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1188 (-0.6936)			0.0180 (0.1040)
	거주면적	-0.0020*** (-5.0306)			-0.0019*** (-4.6092)
	서울·경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3777* (-1.9923)			-0.3895** (-2.0444)
보유세 등 부담여부	재산세 유무		-0.0950** (-2.4105)		-0.0354 (-0.5217)
	재산세 금액		0.0052 (0.4800)		0.0108 (0.9746)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0.0191 (0.2365)		0.0245 (0.3024)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0.0035 (-1.2705)		-0.0035 (-1.2692)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0.0005*** (-7.8740)		-0.0004*** (-6.8847)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상속·증여재산 유무			-0.0228 (-0.5108)	-0.0095 (-0.2106)
	주거환경 만족도			0.1499*** (5.8693)	0.1134*** (4.2847)
	월평균 주거비용			-0.0089*** (-4.4226)	-0.0097*** (-4.7378)
인구통계적 변수 및 소득	성별	-0.1690*** (-4.7997)	-0.1645*** (-4.6706)	-0.1690*** (-4.8006)	-0.1716*** (-4.8602)
	연령	0.0073*** (4.8961)	0.0075*** (5.0013)	0.0064*** (4.3955)	0.0078*** (5.2067)
	혼인상태	-0.1809*** (-3.8889)	-0.1869*** (-4.0397)	-0.1885*** (-4.1642)	-0.1295*** (-2.7440)
	교육수준	-0.2362*** (-7.9499)	-0.2608*** (-8.9788)	-0.2733*** (-9.4439)	-0.2187*** (-7.3232)
	종사상지위	-0.3967*** (-9.8836)	-0.4205*** (-10.4651)	-0.4105*** (-10.2391)	-0.4080*** (-10.1174)
	연간순소득	-0.0008 (-1.2054)	-0.0009 (-1.3356)	-0.0009 (-1.2506)	-0.0008 (-1.2246)
	순자산	-0.0002*** (-7.9700)	0.0002*** (2.9218)	-0.0002*** (-9.1419)	0.0002*** (3.1813)
Log likelihood		-13636.283	-13628.569	-13640.959	-13587.639
Pseudo R ²		0.0409	0.0414	0.0405	0.0443
N		14,497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서울·경기에 소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납세자일수록 세금부담이 높다고 응답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거나 상용직일수록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약간 높다고 응답할 확률이 더 컸으며, 적절한 수준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한계효과 : 세부담의 수평적 공정성

구 분	세금부담이 매우 높음	세금부담이 약간 높음	적절한 수준	세금부담이 약간 낮음	세금부담이 매우 낮음
거주면적	0.0001***	0.0004***	-0.0004***	-0.0001***	0.0000***
서울·경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0129***	0.0804***	-0.0785***	-0.0124***	-0.0024***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0.0000***	0.0001***	-0.0001***	0.0000***	0.0000***
주거환경 만족도	-0.0032***	-0.0229***	0.0210***	0.0042***	0.0008***
월평균 주거비용	0.0003***	0.0020***	-0.0018***	-0.0004***	-0.0001***
성별	0.0048***	0.0346***	-0.0317***	-0.0065***	-0.0013***
연령	-0.0002***	-0.0016***	0.0015***	0.0003***	0.0001***
혼인상태	0.0035***	0.0260***	-0.0235***	-0.0050***	-0.0010***
교육수준	0.0061***	0.0442***	-0.0406***	-0.0082***	-0.0016***
종사상지위	0.0117***	0.0826***	-0.0764***	-0.0150***	-0.0029***
순자산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이처럼 세부담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본인의 세부담이 많고, 유사소득에 비해서도 세부담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거형태에서는 거주면적이 넓거나, 서울·경기에 소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살고 있는 납세자이거나 월평균 주거비용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으며, 보유세 등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일수록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동산 등 자산금액이 높을 경우에도 세금부담이 높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상속·증여재산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월평균 주거비용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주거환경에 불만족스러울수록 세금 부담이 적고, 유사그룹에 비해서도 세금부담이 적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납부한 세금

에 대비한 정부혜택에 있어서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일수록 정부혜택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인구통계적 변수의 경우 기혼자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일수록 본인 세부담이 많으며, 정부혜택은 낮은 수준이고, 비슷한 소득의 납세자 그룹에 비해 세금부담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연령이 많을수록 이와는 반대로 본인 세부담이 낮고, 정부혜택이 높으며, 비슷한 소득의 납세자 그룹 대비 세부담이 낮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부담을 늘려야 할 경우에 납세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한다. 재정패널에서는 이를 복지를 위한 증세기 세부담 의향으로 물어보았기에 보유세 증세기 납세자 인식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겠으나 응답자들의 여러 특징과 증세기 납세자 인식을 파악할 수 있기에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는 관심변수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거나 거주면적이 높을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갖고 있을 경우,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증세기 현재의 세금보다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서울·경기에 소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살고 있는 납세자나 부동산 자산 금액이 높을수록, 월평균 주거비용이 많을수록 현재보다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서울·경기에 소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살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높은 계수값을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봐야겠지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추가 세부담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증세에 대한 추가 부담의향이 없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세부담 의향이 없는 이유는 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퇴를 하여 수입이 없거나, 곧 은퇴가 임박하여 수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보유세에 대한 추가 세부담에 반대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계효과와 경우 추가 부담의향 없음과 현재 세금의 5% 미만을 부담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의 응답확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 비해 증세기 세부담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응답할 확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경기에 거주하면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납세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 비해 추가 부담의향이 없다고 응답할 확률이 11.54%p 높았으며, 현재 세금의 5% 미만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9.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납세자일지라도 거주하는 지역별로 납세의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실증분석 결과 II : 증세기 세 부담 의향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주거형태	거주형태	0.0171 (0.3596)			0.0020 (0.0414)
	점유형태	0.0650 (1.6426)			-0.0334 (-0.5048)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2428 (1.3981)			0.2893* (1.6527)
	거주면적	0.0017*** (4.0801)			0.0018*** (4.0740)
	서울·경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5573*** (-2.8899)			-0.5439*** (-2.8067)
보유세 등 부담여부	재산세 유무		0.1180*** (2.8803)		0.1141 (1.6426)
	재산세 금액		-0.0258 (-1.3904)		-0.0197 (-1.1891)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0.2887*** (3.4446)		0.2815*** (3.3384)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0.0033 (-0.9995)		-0.0037 (-1.1256)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0.0002*** (-3.0020)		-0.0002*** (-2.9939)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상속·증여재산 유무			0.2064*** (4.5015)	0.2041*** (4.4058)
	주거환경 만족도			-0.0189 (-0.7180)	-0.0006 (-0.0217)
	월평균 주거비용			-0.0045** (-2.0677)	-0.0036* (-1.6698)
인구통계적 변수 및 소득	성별	0.1580*** (4.3333)	0.1531*** (4.1982)	0.1545*** (4.2377)	0.1606*** (4.3919)
	연령	-0.0096*** (-6.2226)	-0.0105*** (-6.7135)	-0.0097*** (-6.4046)	-0.0103*** (-6.5932)
	혼인상태	0.1803*** (3.6488)	0.2024*** (4.1183)	0.2377*** (4.9343)	0.1939*** (3.8654)
	교육수준	0.3406*** (11.0701)	0.3620*** (12.0502)	0.3489*** (11.6555)	0.3395*** (10.9746)
	종사상지위	0.2172*** (5.3399)	0.2236*** (5.4873)	0.2285*** (5.6219)	0.2179*** (5.3304)
	연간순소득	-0.0004 (-0.5413)	-0.0004 (-0.5324)	-0.0001 (-0.1691)	-0.0003 (-0.4608)
	순자산	0.0001** (2.4868)	0.0003*** (3.6492)	0.0001** (2.3368)	0.0002*** (3.5499)
Log likelihood		-11830.282	-11830.506	-11835.62	-11804.957
Pseudo R ²		0.0358	0.0357	0.0353	0.0378
N		14,497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표 14> 한계효과 : 증세기 세 부담 의향

구 분	추가 부담의향 없음	현재 세금의 5% 미만	현재 세금의 5~10% 수준	현재 세금의 10~15% 수준	현재 세금의 15% 이상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0690***	0.0531***	0.0138***	0.0013***	0.0007***
거주면적	-0.0004***	0.0003***	0.0001***	0.0000***	0.0000***
서울·경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1154***	-0.0942***	-0.0185***	-0.0017***	-0.0010***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0.0670***	0.0517***	0.0133***	0.0013***	0.0007***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상속·증여재산 유무	-0.0480***	0.0375***	0.0092***	0.0009***	0.0005***
월평균 주거비용	0.0008*	-0.0007*	-0.0002*	0.0000	0.0000
성별	-0.0370***	0.0293***	0.0068***	0.0006***	0.0004***
연령	0.0024***	-0.0019***	-0.0004***	0.0000***	0.0000***
혼인상태	-0.0441***	0.0351***	0.0078***	0.0007***	0.0004***
교육수준	-0.0785***	0.0620***	0.0144***	0.0014***	0.0008***
종사상지위	-0.0505***	0.0398***	0.0093***	0.0009***	0.0005***
순자산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부동산 관련된 조세가 강화될 시에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지역별로 서울이나 경기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고, 부동산 등 기타자산금액이 높은 그룹, 그리고 연령이 높은 고령층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수와 결과값 만으로 판단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가 강화될 경우 이들 그룹들에서 특히 강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다만, 직업의 안정성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세 정책에 보다 협조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책 입안 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해 납세자들, 특히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그룹의 납세자에게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제의 급진적 개편보다는 납세자들이 예측가능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추가분석

기본분석에서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에 대한 여러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을 추가분석한다.

보유세를 부담하거나 기본적인 자산이 일정부분 이상인 납세자들은 소득격차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소 혼재되어 나타난다. 대체로 소득격차가 크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 자산금액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계층간 소득격차가 작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소득격차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커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확률이 높았다. 다만 자가이거나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납세자,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클수록 작아질 것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주거형태나 보유세 부담여부, 상속·증여재산이 있거나 주거 관련된 기타 변수에 있어서 대체로 크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체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중 어느 곳의 노력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납세자들의 응답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대체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유한 납세자의 경우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보다는 개인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실증분석 결과 IV : 추가분석

구 분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계층 간 소득격차	향후 계층 간 소득격차	격차 줄이려는 노력 (정부 vs 개인)
주거형태	거주형태	0.0497 (1.1167)	-0.0563 (-1.2615)	-0.1725*** (-4.0526)
	점유형태	0.0657 (1.0470)	0.1159* (1.8456)	0.0109 (0.1796)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1433 (0.8593)	0.3326** (1.9885)	0.2522 (1.5791)
	거주면적	-0.0001 (-0.2954)	-0.0006 (-1.5399)	-0.0020*** (-5.1439)
	서울·경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0.2325 (-1.2654)	-0.4754*** (-2.5773)	-0.2691 (-1.5218)

<표 15> 실증분석 결과 IV : 추가분석 (계속)

구 분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계층 간 소득격차	향후 계층 간 소득격차	격차 줄이려는 노력 (정부 vs 개인)
보유세 등 부담여부	재산세 유무	-0.0171 (-0.2600)	-0.1211* (-1.8468)	-0.0725 (-1.1446)
	재산세 금액	-0.0293** (-2.0817)	-0.0304** (-2.1317)	0.0177* (1.7298)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0.1055 (1.3395)	0.0049 (0.0635)	0.1872** (2.5332)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0.0016 (0.5211)	0.0072*** (2.7881)	0.0023 (0.9285)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액	0.0002*** (3.1398)	0.0001 (1.4802)	0.0000 (0.6897)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상속·증여재산 유무	-0.1916*** (-4.4010)	-0.2156*** (-4.9568)	-0.1924*** (-4.5883)
	주거환경 만족도	-0.0880*** (-3.5009)	-0.1002*** (-3.9683)	-0.2191*** (-9.1259)
	월평균 주거비용	0.0043** (2.2623)	0.0018 (0.9108)	-0.0008 (-0.4426)
인구통계적 변수 및 소득	성별	-0.0409 (-1.2177)	-0.0299 (-0.8880)	-0.0054 (-0.1680)
	연령	-0.0012 (-0.8629)	0.0042*** (2.9432)	0.0012 (0.8498)
	혼인상태	-0.1714*** (-3.8605)	-0.2428*** (-5.4739)	-0.0061 (-0.1458)
	교육수준	-0.0611** (-2.1517)	-0.0499* (-1.7545)	0.0049 (0.1802)
	종사상지위	0.0630 (1.6307)	0.0848** (2.1981)	0.1716*** (4.6464)
	연간순소득	-0.0001 (-0.1582)	0.0006 (0.8785)	-0.0009 (-1.4058)
	순자산	-0.0002*** (-3.9173)	-0.0001** (-2.5680)	-0.0001 (-1.2940)
Log likelihood		-14307.702	-14426.01	-18469.426
Pseudo R ²		0.0032	0.0062	0.0047
N		14,497	14,497	14,497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V. 시사점 및 결론

조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거셀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형태나 보유세 부담 정도와 납세자의 납세의식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보유세 개편 등 관련 된 조세 정책 개편 시 납세자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주거형태나 보유세 부담 정도 등과 납세의식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납세자의식은 크게 ① 세부담에 대한 인식, ② 증세 시 세부담 의향, ③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해 분석하였으며, 관심변수는 ① 주거형태, ② 보유세 등 부담여부, ③ 상속·증여 및 기타 주거 관련 변수, ④ 통제변수(인구통계적 변수 등)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다는 것만으로는 납세자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가주택 한 채만 보유한 납세자의 경우 기준시가가 9억원(또는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는 없다. 반면, 지역별 구분 자체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보유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며,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납세의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이 높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해당 응답자들은 실제 재산세나 종부세 등 부담하는 세금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즉,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높을수록 여러 납세의식이 부정적일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본인의 세부담이 많다고 느끼는 동시에 세부담에 비해 정부혜택도 많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혜택이 많다고 느끼는 부분을 복지 등 증세와 연관지어 생각할 경우 정부혜택이 적다고 느낄 경우에는 정부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등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늘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세를 한다면 본인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로 정부혜택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주거환경 만족도나 월평균 주거비용이 납세자의식과 여러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보였다. 주거환경 만족도의 경우 불만족스러울수록 본인의 세부담이 적으며, 동일소득그룹 대비 본인의 세부담도 적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본인의 주거환경과 세부담을 결부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거환경 정도가 본인의 세부담 차이에서 발생했다고 인식한 결과라 해석할 수도 있다. 거주면적의 경우도 면적이 넓은 곳에 주거하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납세자 의식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재산세 납부여부나 부동산소득 유무가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았으나 재산세 금액이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절대량이 납세자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유의한 결과값은 있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주거형태 및 보유세와 납세의식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으나 분석에 사용한 납세자의식 관련 문항이나 관심변수 등은 재정패널조사 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설정한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것과 모두 일치할 수는 없었다. 또한 주거형태나 보유세 부담여부 등의 납세자 특성과 납세의식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여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관심변수와 납세자의식의 관계가 일률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혼재되는 부분도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보유세 부담 등 납세자 특성에 따라 납세의식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연관된 정책수립시 조세저항 등을 줄이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있기에 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한 측면이 있다. 끝으로 재정패널에서는 납세자의식에 대해 매년 조사하고 있으나 연도별로 조사항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납세자의식 관련 변수도 지속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항목이 있기에 9차 및 10차 조사연도 자료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참고문헌

- 강민조. 2017.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34권 제3호 : 309-331.
- 김영락. 2014.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 93-121.
- 김우철 · 신영효. 2016.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9권 제2호 : 107-142.
- 김필현 · 김민정. 2018. 『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 연구』 기본과제 2017-0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박명호 · 심태섭. 2008.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 55-84.
- 박명호. 2016.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배수진. 2017. “성실납세자 혜택은 조세순응을 유도하는가? 조건별 보상여부와 혜택 유형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2권 제4호 : 1-35.
- 배수진 · 심태섭. 2011.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 215-273.
- 신나리 · 이영한 · 박기백. 2017. “조세 공정성 인식과 공공서비스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분석 : 통일세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2권 제6호 : 159-194.
- 윤성만 · 전병욱. 2011.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 : 한 · 중 · 일 비교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 363-389.
- 임영규 · 김진찬. 2018. “납세자 특성이 지방세의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제26권 제1호 : 25-44.
- 전태영 · 변용환. 2013.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학연구 제30권 제4호 : 185-208.
- 최승문. 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제264호 : 30-57.
- 현진권. 2005. “한국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1권 제3호 : 135-175.
- Allingham, Michael and Agnar Sandmo. 1972.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3) : 323-338.
- Benno Torgler and Friedrich Schneider. 2007. What Shapes Attitudes Toward Paying Taxes? Evidence from Multicultural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88 (2) : 443-470.
- Erich Kirchler. 1997 The Burden of New Taxes : Acceptance of Taxes as a Junction of

- Affectedness and Egoistic Versus Altruistic Orientation. *Journal of Socio – Economics* 26 (4) : 421–437.
- Friedland, N., Maital, S. and Rutenberg, A. 1978. A Simula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 (1) : 107–116.
- Jackson, B., and V. Milliron.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 : 125–165.
- Lewis, A. 1982. The psychology of taxation. Oxford, Martin Robertson.
- Torgler, B. 2004. Tax morale in Asian countries. *Journal of Asian Economics* 15 : 237–266.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The Effect of Housing Status and Property Tax on Tax Morale in Korea

Shin, Young Hyo* · Jung, Kyu 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housing status and property tax on tax morale in Korea. The main concern is to understand the taxpayer's consciousnes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variables and tax morale in various angles, focusing on the taxpayers who pay the property tax on house. In this paper, we measured the perception of tax burden, intention to pay tax, perception of income gap using the financial panel data publish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Firs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of the house owned and the taxpayer's perception, however, the higher the tax burden on the taxpayer's property, the more the taxpayer's consciousness became negative. Second, taxpayers who pay property tax think that the more the tax burden, the more the government benefits. Thir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monthly average housing cos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ax morale. It is analyzed that the taxpayer who resides in a large-sized house has a positive tax morale. Fourth, although the payment of property taxes or the existence of real estate income affected the taxpayer's consciousness, the amount of property tax or property rental income did not affect the taxpayer's conscious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ownership type and property tax and tax morale in various angles, and expects to be used as reference data when establishing real estate related policies.

〈Key words〉 Property tax, Tax morale, Real estate income, Housing status

* Collegiate Professor,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younghyo@koreatech.ac.kr, First Author

** Professor, College of Global Business, Korea University, jungkyu@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

<부 록>

〈표 16〉 납세자 의식 관련 빈도수

구 분		내 용	빈도수(비율)
세부담에 대한 인식	본인 세금 납부 정도	① 매우 많이 납부한다	718(4.95)
		② 약간 많이 납부한다	5,004(34.52)
		③ 적절하게 납부한다	7,887(54.40)
		④ 약간 적게 납부한다	682(4.70)
		⑤ 매우 적게 납부한다	206(1.42)
	본인 납부 세금과 정부혜택에 대한 인식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68(0.47)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1,606(11.08)
		③ 적절한 수준이다	6,712(46.30)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4,756(32.81)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355(9.35)
	본인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그룹과 비교한 본인의 세부담에 대한 인식	① 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	492(3.39)
		② 세금 부담이 약간 높다	4,851(33.46)
		③ 적절한 수준이다	8,366(57.71)
		④ 세금 부담이 약간 낮다	661(4.56)
		⑤ 세금 부담이 매우 낮다	127(0.88)
증세기 세부담 의향	복지 수준 확대 위한 증세기, 추가 부담 의향	① 추가 부담할 의향이 없음	9,101(62.78)
		② 현재 세금의 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4,565(31.49)
		③ 현재 세금의 5-10% 미만 추가 부담 의향	727(5.01)
		④ 현재 세금의 10-1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67(0.46)
		⑤ 현재 세금의 15% 이상 추가 부담 의향	37(0.26)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① 매우 크다	5,443(37.55)
		② 약간 크다	7,384(50.93)
		③ 보통이다	1,562(10.77)
		④ 별로 크지 않다	99(0.68)
		⑤ 전혀 크지 않다	9(0.06)
	우리나라 향후 계층 간 소득 격차	① 매우 커질 것이다	5,440(37.53)
		② 약간 커질 것이다	7,351(50.71)
		③ 보통이다	1,555(10.73)
		④ 약간 작아질 것이다	143(0.99)
		⑤ 매우 작아질 것이다	8(0.06)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중요한 것 (정책 vs 노력)	① 정부 정책	4,179(28.83)
		②	6,043(41.68)
		③	3,162(21.81)
		④	984(6.79)
		⑤ 개인 노력	129(0.89)